

9.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중 개정지침

건설교통부 주정 제58500-3,525 : '98. 9. 28

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제1호의 국민주택 이외의 아파트로서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중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에 건설하는 아파트(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아파트에 한한다.)

부 칙

1. 이 지침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.

주택회보